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성북구의회 의안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져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의안 배부 방식과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을 개선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안 제출일 명시(안 제9조)

나. 의안 배부 방식 개선(안 제10조)

다.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안 제55조)

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제2항 중 “제7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기)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회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2조제1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 략) <신 설>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서면 또는 전자문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② (생 략)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삭 제>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